

**안산시-신안산대 반려동물 문화·동물보호
업무협약 보고의 건**



안 산 시

안산시-신안산대 반려동물 문화·동물보호 업무협약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10-21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「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협약 보고하는 사항임
- 안산시의 행정역량과 신안산대학교가 보유한 반려동물 분야 전문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동물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

※ 사후보고 사유 : 협약 체결의 적기성

- 안산호수공원 반려견놀이터 개장(2026.8.1.)에 맞춰 사업추진의 적기성 확보

☐ 협약개요

- 협약 체결일 : 2026. 7. 30.
- 협약기간 : 협약서 서명일로부터 1년(자동갱신)
- 대상기관 : 안산시, 신안산대학교
- 소요예산 : 없음.

☐ 주요내용

- 반려견놀이터 운영 지원 및 이용 활성화
- 반려동물 문화교실 및 행동교정 교육 등 시민교육
- 길고양이 보호활동 지원 및 시민 인식개선 협력

☐ 협약서(안) : 【붙임1】

☐ 협약 안전 점검표 : 【붙임2】

반려동물 문화 및 동물보호 협력 업 무 협 약 서

안산시와 신안산대학교(이하“협약기관”)는 안산지역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동물보호 사업(이하“반려동물보호등 사업”)을 공동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반려동물보호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사항) 협약기관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다음 각 호의 협력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한다.

1.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·운영, 문화공간 조성 및 문화 확산
2.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·홍보
3.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, 펫티켓 교육 및 행동교정 교육
4. 길고양이 보호활동 지원 및 시민 인식개선 활동 협력
5. 그 밖에 동물복지증진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협력사항의 추진) ① 협약기관은 협력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실무협 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2조에 따른 협력사항의 세부 추진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협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협의한다.

제4조(개인정보 보호) 협약기관은 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, 협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조(비밀유지) 협약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수 없고,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. 다만, 협약기관이 미리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6조(협약의 효력) ①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한 날부터 1년간 효력이 있으며, 협약기간 만료 전 협약갱신의 거부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는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한다.

② 협약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합의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, 이미 추진 중인 협력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처리한다.

③ 이 협약은 협약기관을 구속하는 법적효력이 없다.

제7조(협약의 해석 등) ① 이 협약내용의 해석에 의견을 달리하거나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
② 이 협약의 내용은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협약기관이 모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7월 30일



안 산 시
시 장 이 민 군



신 안 산 대 학 교
총 장 지 의 상

협약(보고) 안전 점검표

협약명	반려동물 문화·동물보호 업무협약
-----	-------------------

구 분	검 토 항 목	점 검 결 과												
개 요	1. 협약 기간 : 2026.7.30. ~ (자동갱신)	(1년)												
	2. 협약 성격	신 규 ☒ 연 장 ☐												
	3. 공모사업 관련	여 부 ☐ ☒												
	4. 협약 당사자 : 안산시, 신안산대학교	1곳 ☒ 2곳 이상 ☐												
	5. 협약안건 의회 제출 시기 (체결일 : 2026. 7. 30.)	체결 전 ☐ 체결 후 ☒ (직후 회기/ 그 외)												
	6. 의회 의결후 효력발생 조건 명시 ※ 보고건 협약 제외	유 무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예산 관련	1. 의무부담 내용	유 무 ☐ ☒												
	1-1. 비용추계 (단위: 천원)													
	<table><tr><td>구 분</td><td>합 계</td><td>2026</td><td>2027</td><td>2028</td><td>2029</td></tr><tr><td>금 액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td>-</td></tr></table>		구 분	합 계	2026	2027	2028	2029	금 액	-	-	-	-	-
	구 분	합 계	2026	2027	2028	2029								
금 액	-	-	-	-	-									
☞ 그 외사항 : 기타 권리포기 등 의무부담일 경우 기재														
	2. 예산부서와 사전협의	유 무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행정 관련	1. 기타 관련 법령 저촉 관계	유 무 ☐ ☒												
	2. 행정 절차 -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여부 (예: 중기지방재정계획, 공유재산관리계획 등) ☞ "미이행"의 경우 계획제출	유 무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
	3. 협약 전/후 관계자 의견 수렴 - 협약 체결 전·후 관련 부서나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여부(관련부서:)	유 무 ☐ 비해당 ☒												